

##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(안)

의안 번호	32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4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제안이유

권한의 합리적인 배분과 업무추진의 일원화로 자치단체의 생산성을 높여 행정의 간소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자 함

### 주요골자

- 보건과 소관의 의료보수인가
- 축산과 소관의 동물약사감시와 내수면어업면허 등  
2 개과 3 건의 도지사 관장 사무를 시장, 군수, 출장소장  
에게 위임

### 근거법령

- 의료법 제37조
-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9조 제2항
- 내수면개발촉진법 제 7조
-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조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(별표1) 중 보건과 소관 제61호 다음에 제6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분야별	일련번호	사무명	근거법령
보건과	62	의료보수 인가	의료법 제37조

(별표1) 중 축산과 소관 제39 내지 제54호를 제40호 내지 제55호로 하고 제39호 및 제56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

분야별	일련번호	사무명	근거법령
축산과	39	동물약사 감시	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29조제2항
	56	내수면어업면허	내수면개발촉진법 제7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## 신 . 구조문 대비표

현		행		개		정	
분야별	일련 번호	사 무 명	근거법령	분야별	일련 번호	사 무 명	근 거 법 령
보건과	1- 61	( 생략 ) ( 신설 )		보건과	1-61 62	(현행과같음) <u>의료보수인가</u>	의료보호법제 제37조
축산과	1- 38	( 생략 ) ( 신설 )		축산과	1-38 39	(현행과같음) <u>동물약사감시</u>	동물용 의약품취 급규칙 제29조 제2항
	39- 54	( 생략 ) ( 신설 )			40 - 55	현행39-54호 와 같음	
					56	<u>내수면어업 면허</u>	내수면개발촉진 법제7조

## 참 고 자 료

- 의료법 제37조
- 동물용 의약품등취급규칙 제29조 제2항
- 내수면개발촉진법 제7조
-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조

## 【 의료법 】

- 제37조(의료보수) 의료기관이 환자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관하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## 【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】

- 제29조(동물약사감시원) ①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약사감시원은 농림수산부장관, 시.도지사 또는 시장.군수가 그 소속공무원중 수의사 또는 약사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임명한다.  
② 동물약사감시원의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다.
  1. 농림수산부소속의 동물약사감시원 :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들에 대한 약사감시. 다만, 농림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동물약사감시원으로 하여금 동물용의약품등의 취급자에 대하여 약사감시를 하게 할수 있다.
  2. 시.도지사소속의 동물약사감시원 : 관할구역안의 동물약품도매상에 대한 약사감시. 다만, 시.도지사는 농림수산부 장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소속동물 약사감시원으로 하여금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약사감시를 하게 할 수 있다.
  3. 시장.군수소속의 동물약사감시원 : 관할구역안의 동물약국 개설자, 동물용의료용구 및 동물용위생용품의 판매업자에 대한 약사감시

## 【 내수면개발촉진법 】

○ 제7조 (면허어업)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.

1. 양식어업 : 공유수면 또는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수면에서 일정한 수면을 구획 기타 시설을 하여 수산동식물을 약식하는 어업
2. 정치어업 :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정치어구를 설치하여 어류를 채포하는 어업
3. 공동어업 :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일정한 수면을 전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조성. 채포하는 어업
4. 조류채취어업 : 일정한 수면에서 순채 기타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조류를 조성. 채취하는 어업

## 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】

○ 제3조 (위임, 위탁의 기준등)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, 인가,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,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의 일부(이하 “행정권한”이라 한다)를 그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의 장, 다른 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. <개정 84. 2. 29>

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84. 2. 29>

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,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. <개정 84. 2. 29>